

□ (개선 분류방식) 중소기업기본법을 반영하던 기존 방식은 유지하
 되, 중견기업특별법, 기타 관계 법령을 반영하여 보다 세분화

① (대기업) 대기업을 상출기업 / 기타 대기업으로 세분화

○ (상출기업)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('16.9.30. 시행)을 반영하여 공정위가
 지정하는 기업집단* 중에서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
 기업집단(공공기관 제외)에 속하는 기업

*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(계열사)으로서 지분율
 또는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

○ (기타 대기업) 중소기업 규모는 초과하지만 상출기업 및 중견기업에 포함되지
 않는 기업으로 시장형·준시장형 공기업 및 일부 공공기관, 순수 금융·보험업,
 자산 10조 원 이상인 법인(외국법인 포함)의 피출자기업 등으로 구성

② (중견기업)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규모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산이
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및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

○ 단, 상출기업, 중견기업 독립성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(자산 10조 원
 이상인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피출자기업), 금융·보험업, 공공기관 및
 중소기업 유예 및 경과조치 기간 중인 기업은 제외

③ (중소기업) 중소기업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중기업 / 소기업으로 세분화

○ (중기업)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가 중소기업이면서 소기업
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유예 및 경과조치 기간 중인
 기업은 중기업으로 분류

○ (소기업)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가 중소기업이면서 소기업
 규모 이하인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

<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기업규모별 분류 방식>

| | | | | |
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대기업 | | 중견기업 | 중소기업 | |
| 상출기업 | 기타 대기업 | | 중기업 | 소기업 |